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6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7. 3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일·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가족친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 -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사업
 -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사업
 - 가족친화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
 -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, 제9조, 제11조,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7. 2. 14. ~ 2017. 3. 6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달성군 주민 및 달성군 소재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가족친화 사회환경"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,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.
2. "가족친화 직장환경"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.
3. "가족친화제도"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.
 - 가. 탄력적 근무제도 :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
 - 나. 자녀의 출산·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: 배우자 출산휴가제, 육아휴직제, 직장보육 지원,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
 - 다. 부양가족 지원제도 : 부모 돌봄 서비스, 가족간호휴직제 등
 - 라. 근로자 지원제도 : 근로자 건강·교육·상담프로그램 등
4. "가족친화 마을환경"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.

제3조(법령 등과의 관계)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① 달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7.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
8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결과 활용)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·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의 추진 및 지원)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
2.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
3.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
4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, 마을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·촉진사업
 2.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·촉진사업
- ③ 군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그 기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하는데 기여한 군 소재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 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)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
2.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
3.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
4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11조(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
 2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
 3.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
 4.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5.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
 6.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.

제13조(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·보급
 2.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
 3.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·지원
 4.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
 5.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